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2017구합76098]

사 건 명 :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 원고1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원고보조참가인 : 원고2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 론 종 결 : 2018. 3. 16.

판 결 선 고 :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망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 선박인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3. 10. 14:47경 바지 지퍼를 열은 채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해 있던 제주 ○○항 화물선부두 인근 해안에서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어선원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4. '해저케이블 관리선인 이 사건 선박에서 발생한 재해는 어선원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어선법 제13조 제1항,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이므로, 어선원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해저케이블 관리 업무도 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도에 어획물운반업자인 ○○○ 등과 이 사건 선박으로 어획물운반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선주인 참가인 측은 이에 맞춰 어획물운반 업무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구입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을 어획물운반선 용도로 정비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어선원인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어업활동과 관련된 위 업무를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어선원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28조의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망인의 음주로 인해 그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선박의 정비·관리업무를 위해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어선원보험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어선원보험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고(어선원보험법 제1조), 여기서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

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어선원보험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에는 유족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등이 있다.(어선원보험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선원등이 어업 활동을 수행하다가 그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또는 '어선원등이 어업 활동을 위해 어선에 승선해 있던 중 그 직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만 그 어선원등의 유족이 어선원보험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어업 활동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에 고용된 자가 '그 직무상 사유' 또는 '승무 중 그 직무 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어선원보험법 상의 어선이라 하더라도 어선원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갑 제1, 5, 6,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어선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참가인은 2013. 3. 7.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사실, 참가인은 어선원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참가인의 아버지 ○○○은 2015년 말경 어획물운반업자인 ○○○ 등과 2016. 4. 경부터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어획물운반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참가인의 아버지 ○○○은 그 무렵 수중펌프, 물탱크 등을 구매한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작업용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 사건 선박의 기관 작업을 할 때 위 장갑을 착용한 사실, ○○○○경비안전서는 망인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2016. 3. 10. 시간미상경 해상기상이 불량한 시점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중등도의 명정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의 기관 작업중 선내 갑판에서 소변을 보다 해상

에 추락,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2010년경부터 해저케이블 관리 업무를 하였고, 망인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고용되어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 활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망인과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은 2016. 3. 8.경 이 사건 선박을 운전하여 해저케이블 관리 업무를 하다가 기상악화로 인해 제주 ○○항에 정박한 사실, 기상이 좋아지면 해저케이블 관리 업무를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을 ○○항에 계속 정박해 놓았는데, 이를 뒤인 2016. 3. 10. 망인이 위 항구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어업 활동을 수행하다가 그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내지 '어업 활동을 위해 어선에 승선해 있던 중 그 직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어선 원보험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저케이블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과 ○○○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 4.경 이후부터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어획물운반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선박에서 어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선박을 어획물운반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준비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어획물운반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한 것만으로는 망인이 어업 활동 준비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망인이 ○○○이 구입한 위 물품 및 장비를 이 사건 선박에 설치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도 전혀 없다[원고가 제출한 구매물품사진(갑 제14호증)에 의하면, 그 구매물품이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③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을 운전하여 해저케이블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기상이 좋아지면 다시 출항하기로 하고 ○○항에 이 사건 선박을 잠시 정박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기관 작업을 위해 승선을 하였다면, 이는 해저케이블 관리 업무와 관련한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에 승선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